

금년 10월, 식품회수(Recall)제가 전 품목에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식품제조업자나 수입업체의 제품이 유해식품이라고 판명되면 전량을 자진 회수, 폐기해야 한다. 즉, 식품회수제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해식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조치이며 자율적 규제조치이다.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식품회수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집중분석! 식품회수제 벗겨 보기

올 10월 본격 시행에 따른 해설 및 대응방안(Ⅰ)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식품을 회수, 폐기처분하는 식품회수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식품회수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이 밝혀지면서 식품업계에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회수(Recall)제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해식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유해식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제도 및 강제회수제도 도입 근거 및 공표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시행방안을 갖고 금년 4월 1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 시행방안은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부처와 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안(案)을 확정하여 공표한 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적 규제

현재 정부는 각종 행정 및 경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이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규제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각종 유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식품회수제도의 도

식품 위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진회수 책임은
 영업자 중 위해발생 원인을 제공한자가 책임을 지며,
 영업자간에 책임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자진회수담당관이 조사 후 결정토록 되어있다.

입은 생산 위주의 기업 경영에서 이제는 소비자를 우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하여 한정된 처벌에서 관련 제품 전체를 책임지는 무한 책임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식품행정 쇄신대책으로 종전의 사전통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종전의 사전관리와는 달리 사후관리는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사후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해식품으로 판명되었을 때 생산자, 유통자 등의 영업자가 문제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하여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압류, 폐기의 제재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수단이 되고 있는 회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더욱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물 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의 도입이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어 기업은 이제 스스로 자사 상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품질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회수(Recall)와 PL제도는 두 제도 모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회수제도는 결함이 있는 물건을 전량 수거해 보상·수리·교환해 주는 「사전적 피해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 반해 PL제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 배상해 주는 「사후적 구제」의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1995년 12월 말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위해물품에 대한 결함 시정제도(소위 리콜제도)의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금년 4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식품을 포함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완구 등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는 위해방지기준 위반물품 또는 위해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해당 주무장관에게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함을 시정한 후에는 그 결과를 주무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즉, 각 위반제품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 회수를 시행하는 주무관청이 되며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지침하에 식품 회수를 운영하게 된다.

리콜의 주체는 수입·제조·운송·보관·판매 업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예정인 식품회수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수형태를 알아본다. 그 형태로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위해를 발견하여 영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자진회수'가 있고, 회수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영업자가 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품위해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회수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자는 회수에 대한 명을 받고 자진회수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실시하는 '강제회수'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일 위해식품 회수명령 대상자에 제조·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운송이나 보관·판매자도 포함시켰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진회수 책임구분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진회수 책임은 영업자 중 위해발생 원인을 제공한자가 책임을 지며, 영업자간에 책임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회수담당관이 조사 후 결정토록 되어있다. 자진회수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된 경우 위해발생 책임에 대한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현재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자의 범위가 넓어 책임문제를 놓고 서로 회수를 미루는 현상 발생을 우려, 회수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주문자를 회수책임자로 지정한다는 것(이때 상표권자는 제조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을 들 수 있다. 또 식품회수 대상을 살펴보면, 위해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제도는 "상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회수, 수거하고 자발적 리콜의 경우도 정부의 보고하에서 시행하고 위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상품도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으며 "리콜의 주체는 수입업자를 포함한 제조업자로 결함의 소재에 따라 중간 유통업자 및 최종판

식품회수대상범위

- 위해식품 및 위해식품첨가물
-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육과 그 부산물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
- 유독기구 및 용기·포장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기구와 용기·포장
- 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 표시된 식품과 식품첨가물
-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식품 등



▲제과점에서 제조과정상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매자도 리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리콜의 형태별로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외국의 식품회수대상 범위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식품에 대한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또는 식품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식품을 회수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회수대상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제품과 잠재적으로 인체

에 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갖는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수상황은 일반 및 긴급 상황으로 분류

식품 등의 회수상황은 긴급상황과 일반상황으로 분류한다.

식품 등의 소비나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긴급상황'으로 분류되며 이를 언론에 공표 해야한다.

또한 긴급상황은 아니나 식품 등의 소비나 사용으로 건강 위해 가능성을 나타낼 만큼 중대한 결함을 갖는 경우로서 긴급상황을 제외한 기타 식품회수상황의 경우이다. 즉 잠재적인 건강 위해를 갖거나 법률상 위반제품을 사용했을 경우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이를 '일반상황'으로 정한다.

회수상황 분류는 영업자 및 식품전담부서에서 분류되며 영업자가 분류한 회수상황 분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전담부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회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유통업자는 이를 공표해야하는데 긴급상황인 경우는 5일 이내에 2개 이상 중앙일간지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1개 이상 방송에 회수공표문을 게재하고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 2항의 규정을 보면 회수공표문의 규격은 크기 5단×10cm 이상, 가장자리는 대각선으로 빗금친 것으로 테두리를 두르게 하며 위치는 당일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의 5면 이내에 게재하게 하여 소비자가 회수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식품 등의 소비나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긴급상황'으로 분류되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 해야한다.

회수공표문에 게재할 내용

- 제품명, 포장용기, 형태 등 외관
- 영업자(제조회사 등)명칭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 회수이유
- 회수상황의 분류
- 유통량 및 수입량
- 회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식품회수관련 담당 체계의 구축

식품의 회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식품회수전담부서를 중앙과 각 지방에 설치·운영하며 중앙에 '중앙회수담당관' 과 각 지방에 '지방회수담당관' 을 두어 회수상황을 총괄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중앙회수담당관을, 시·도 지방식품의약청과 시·군·구에 지방회수담당관을 두도록 했으며, 식품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상황을 평가하고 회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식품학, 독성학, 의학, 미생물학, 법률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로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2]

용어 해설

- 회수상황: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 영업자: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또는 수입한 자를 말하며, 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인이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도 포함한다.
- 회수범위: 회수되는 제품이 유통되는 범위.
- 회수공표문: 언론에 공표하는 회수관련 공표문.
- 회수문: 영업자가 유통업소에 발송하는 회수통지문.
- 구상권: OEM에서 회수를 실시한 상표권자가 제품 제조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

(다음 9월호에서 현행 식품회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식품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